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트적격TDF2040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
[illegible]

	사. <u>트러스트 증권채권 증권모투자신탁 [채권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30%이하로 한다.</u> 2.(생략) <신설> 3. (생략) 4. (생략)	<삭제> 2. (현행과 같음) 3. <u>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이하로 하고, 채무증권 투자액의 100분의 50이하로 한다.</u> 4. <u>(호변 변경)</u> (현행과 같음) 5. <u>(호변 변경)</u> (현행과 같음)
호변 변경	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 제16조 제1호 <u>내지 제4호</u>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5.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<u>내지 제4호</u>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	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① 제16조 제1호 <u>및 제5호</u>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5.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6조제1호 <u>및 제5호</u>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
	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u>